



# 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

2018. 04.



하동군

# 제 출 문

하동군수 귀하

귀 청에서 본 연구원에 의뢰한 『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』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18. 04.

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  
이사장 손 주 환

---

研究參與者

책임연구원

손 주 환

# 목 차

## 제1장 과업의 개요

---

- 1. 과업의 목적 ..... 2
- 2. 과업의 범위 ..... 2

## 제2장 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추진 배경

---

- 1. 추진배경 ..... 4
- 2. 시설현황 ..... 4

## 제3장 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운영관리비 산정

---

- 1. 민간위탁비 ..... 7
- 2. 인건비 ..... 8
- 3. 보험료 ..... 9
- 4. 복리후생비 ..... 10
- 5. 경비 ..... 10

## 제4장 수익금 산정

---

- 1. 수입금 산정 ..... 12

## 부록

---

- 1. 인건비 관련 자료 ..... 14

# 제1장

## 과업의 개요

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

1. 과업의 목적
2. 과업의 범위

## 제1장 과업의 개요

### 1. 과업의 목적

- 본 과업은 금오산 레저스포츠 시설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정확한 원가분석으로 위탁입찰가격의 타당한 근거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용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정책결정 및 경영개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### 2. 과업의 범위

- 시간적 범위
  - 기준년도 : 2018년을 기준으로 하되, 수집 가능한 최근자료를 참고
  - 적용년도 : 위·수탁 사용료(2018년)
- 분야별 범위 : 빅스윙, 파워팬, 쿼점프 시설 위탁관리 사업
- 대상별 범위
  - 빅스윙 L = 0.024km
  - 파워팬/쿼점프 L = 0.012km
- 내용적 범위
  - 금오산 레저스포츠 시설 위탁관리 수익금분석
  - 금오산 레저스포츠 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분석
  - 금오산 레저스포츠 시설 위탁관리 수지분석

## 제2장

### 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추진 배경

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

1. 추진배경
2. 시설현황

## 제2장 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추진 배경

### 1. 추진배경

- 한려해상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 자원을 지닌 금오산에 스릴과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시설 빅스윙, 파워팬, 킥점프를 개장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시설현황

- 빅스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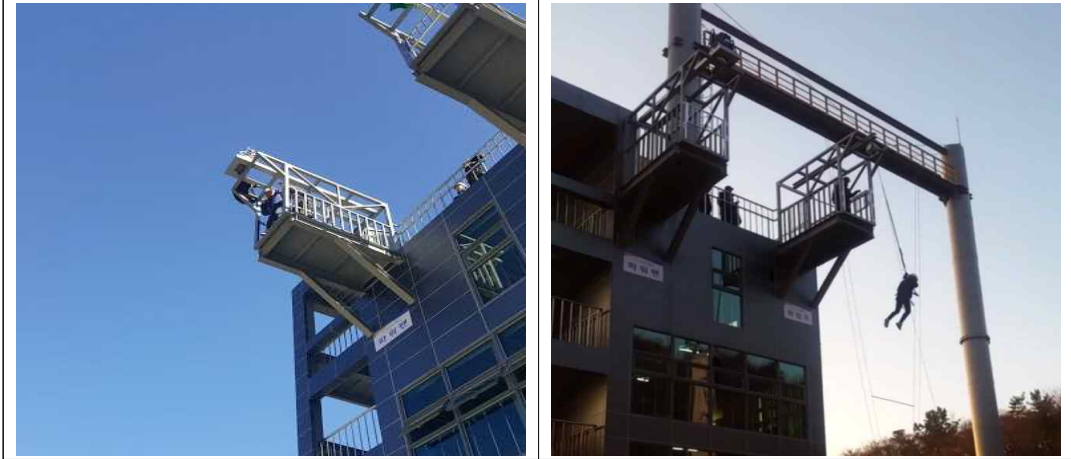
탑승객이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구동장치에 의해 일정높이까지 천천히 올라간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이탈장치 줄을 당겨 기구와 이탈하면서 전방을 향해 비상하는 레포츠 시설





○ 파워팬/킥점프

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서 서서히 지면에 착지하게 하는 미니 점프시설





## 제3장

# 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운영관리비 산정

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

1. 민간위탁비
2. 인건비
3. 보험료
4. 복리후생비
5. 경비

## 제3장 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운영관리비 산정

## 1. 민간위탁비

(단위 : 원/월, 년)

구분		월간 금액	년간 금액	구성비	비고	
순 원 가	직접 노무비	3,895,526	46,746,306	64.2%		
	경 비	보험료	347,370	4,168,445		
		복리후생비 (피복비,식대)	210,166	2,521,992		
		경비	324,598	3,895,172		
		소 계	882,134	10,585,609	14.5%	
순원가		4,777,660	57,331,915	78.7%	인건비+경비	
일반관리비		238,883	2,866,596	3.9%	순원가×5%	
이윤		501,654	6,019,851	8.3%	(순원가+일반관리비)×10%	
<b>합계</b>		<b>5,518,000</b>	<b>66,216,000</b>	<b>90.9%</b>		
부가가치세		552,000	6,624,000	9.1%	(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)×10%	
<b>총원가</b>		<b>6,070,000</b>	<b>72,840,000</b>	<b>100.0%</b>	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+부가가치세	
수입금		1,792,519	21,510,222			
차액		-4,277,482	-51,329,778			



## 2. 인건비

(단위 : 원)

구분	운영팀	비고
	단순노무종사원	
시 급	8,612	
일 급	68,899	
기본급	1,498,553	
주휴수당	299,383	
퇴직급여충당금	149,827	
월평균인건비	1,947,763	
월평균인건비 (퇴직금제외)	1,797,936	
연간1인당인건비	23,373,153	
대상인원	2	
<b>합계</b>	<b>46,746,306</b>	

주 1) 기본급 수량산출근거

① 주5일, 8시간(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) 근무기준

② 일급 = 시급 × 8시간

기본급: 일급 × 21.75일 {(365일 - 104일) / 12개월 = 21.75일}

주 2) 주휴수당 산출근거

① 일급 × ((365일 ÷ 7일) ÷ 12개월)

주 3) 퇴직급여충당금 산출근거

① 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 ÷ 12개월

## 3. 보험료

(단위 : 원/월)

구분	단위	수량	대상금액	금액	비고
<b>보험료 대상금액</b>					
단순노무종사자	인	2	1,797,936	3,595,872	
<b>소계</b>		<b>2</b>		<b>3,595,872</b>	
<b>보험료 대상금액</b>					
국민연금보험료	인	4.50%	3,595,872	161,814	
국민건강보험료	인	3.12%	3,595,872	112,191	
장기요양보험료	인	7.38%	112,191	8,280	
고용보험료	인	0.90%	3,595,872	32,363	
산재보험료	인	0.85%	3,595,872	30,565	
임금채권보장보험료	인	0.06%	3,595,872	2,158	
<b>소계</b>				<b>347,370</b>	



#### 4. 복리후생비

(단위 : 원)

구분	단위	수량	인원	단가	금액	원계상액	비고
하복	벌/년	1	2	43,000	86,000	7,166	
동복	벌/년	1	2	63,000	126,000	10,500	
식대	원/년	231	2	5,000	2,310,000	192,500	
<b>합계</b>			<b>2</b>		<b>2,522,000</b>	<b>210,166</b>	

#### 5. 경비

(단위 : 원)

구분	연간(2017년기준)	월간	비고
통신비	553,172	44,431	
소모품비	589,000	49,083	
보안서비스료	1,320,000	110,000	
시설물정기검사료	423,000	35,250	
웹호스팅갱신료	500,000	41,667	
광고선전비	530,000	44,167	
<b>합계</b>	<b>3,895,172</b>	<b>324,598</b>	

## 제4장

# 수익금 산정

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

### 1. 수입금 산정



## 제4장 수익금산정

### 1. 수입금 산정

(단위 : 인, 원)

구분	적용	비고
상품매출	957,860	
서비스매출	20,552,362	
금액	21,510,222	

# 부록

금오산 레저스포츠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

## 1. 인건비 관련 자료



## 부 록

## 1. 인건비 관련 자료

일련 번호	직 종 명	2017.6월 조사노임	2016.6월 조사노임	직 종 해 설
117	편 직 원	78,996	70,567	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,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
118	미 역 가 공 원	76,412	74,634	각죽을 가공하거나 모피 또는 양모가 있는 원피를 처리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
120	전 기 기 사	115,569	103,045	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, 보수, 유지, 관리하는 전기기술자로서 관리·감독에 종사하는 사람(자격증 소지)
121	전 기 선 업 기 사	107,480	95,201	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, 보수, 유지, 관리하는 전기기술자(자격증 소지)
122	전 기 기 능 사	97,959	86,394	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(자격증 소지)
126	컴 퓨 터 운 용 사	-	-	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,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,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
127	콘 크 리 트 제 품 성 형 기 조 작 원	85,853	82,527	콘크리트 제품물 생산하는 압축 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할 수 있는 사람
128	특 수 차 운 전 원	84,574	83,850	지게차, 레이콘,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
129	돌 분쇄 원	80,831*	78,695*	착암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돌을 재단, 절단,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(석공도 이에 분류한다.)
131	소 성 원	73,574	71,863	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하는 사람
133	폐 수 처 리 원	85,357	82,603	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
134	식 품 제 조 원	68,547	66,662	아이스크림, 양념육, 빵, 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
135	단 순 노 무 종 사 원	68,899	66,630	유리 이동차, 목재선별분류,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,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
136	작 업 반 장	96,656	94,029	단순노무종사원을 관리하는 반장,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, 통솔하는 사람 또는 관리 책임자
137	안 전 관 리 사	109,480	108,666	작업자의 작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
138	벨 트 컨 베 이 어 작 업 원	72,177	70,290	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를 구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
139	보 일 러 조 작 원	86,975	85,699	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,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
전체평균		78,014	74,445	

주) \*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'-'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- 42호

##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8. 4.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### 1. 최저임금액

업 종	결정단위	시 간 급
	모 든 산 업	7,530원

◆ 월 환산액 1,573,770원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### 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### 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8. 1. 1. ~ 2018. 12. 31.

## 근로기준법

[시행 2018.3.20.] [법률 제15513호, 2018.3.20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근로기준정책과 - 근로시간, 휴게, 휴일) 044-202-7549

고용노동부(근로기준정책과 - 소년, 근로자) 044-202-7535

고용노동부(여성고용정책과 - 여성) 044-202-7475

고용노동부(근로기준정책과 - 임금, 해고, 취업규칙, 기타) 044-202-7534

**제60조(연차 유급휴가)**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2.2.1.>

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2.2.1.>

③ 삭제 <2017.11.28.>

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
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,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2.1., 2017.11.28>

1.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
2.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

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 다만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시행일 : 2021.7.1.] 제60조

**부칙** <제12527호, 2014.3.24.>

**제1조**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
2.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: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

**제2조**(해고 예고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제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**(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